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4
----------	-----

제출년월일: 1997년 3월 6일

제 출 자: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 먹는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령의 개정에 따른 시험항목·검체소요량 조정 및 용어정비
-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환경부령)에 따른 시험항목별 검사수수료를 인상

### 주요골자

- 먹는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먹는샘물·수처리제 및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시험항목을 신설하거나 용어 정비
- 시험용검체 소요량 및 처리기간 조정
- 각종 검사수수료를 물가안정과 주민부담을 감안 소폭인상 조정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 : 별첨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중 "공중위생법에 의한 음용수, 수처리제"를 "공중위생법에 의한 욕수·공중이용시설"로 하고 동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진동,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축산폐수처리및정화시설·정화조·오수정화시설·분뇨처리시설등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 원·정수및간이상수도,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처리제·먹는샘물·먹는물공동시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욕수·골프장잔류농약성분,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에 의한 오염물질 등의 검사, 시험,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연구원에 검사, 시험, 분석, 감정 및 소분, 봉합(이하 "검사시험등"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의 의뢰서 또는 신청서와 별표1에 정한 시험용 검체소요량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제6조 제2항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동조 제3항중 "별지 제4호 서식 검토의뢰서"를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고 별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품목은 별표에 규정된 내용과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하며, 관련법규의 개정에 의하여 추가되는 항목은 동조례 개정시까지 관련법규를 준용할 수 있다.

제8조 제1항중 "별지 제5호 서식(관원시험성적서), 별지 제6호 서식(민원시험성적서), 별지 제7호 서식(검토결과통보서)"을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한다.

제9조(수수료감면)중 "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의한다"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가 그 기능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 할 경우 다음 각호의1에 한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각급학교,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 수수료는 먹는물 검사 수수료의 50% 감면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의 제6호를 삭제하고, 동표 제7호를 제6호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며, 동표 제8호를 제7호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내지 별지 제7호 서식"을 각각 "별지 제6호 서식 내지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호 서식 내지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 내지 별지 제1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접수처리중인 사항은 종전규정에 의하며, 종전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한 서식과 병용 할 수 있다.